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62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 가. 고등학교 현장실습은 학교-학생-산업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참여자 간 의견수렴과 이해·협력이 중요하므로, 현장실습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당사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학생 참여권을 보장 하고,
- 나.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 받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 할 수 있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실제 사업장에서 보다 폭넓게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현장실습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현장실습 당사자인 ‘학생’을 포함시켜 개정 함(안 제9조)
- 나.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이를 보고를 받았을 때 지체없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로 보호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8]

-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 2)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과  
협의 완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2) 입법예고(2022. 1. 28. ~ 2. 16.)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3) 교육규제심사: 해당없음 (행정처분, 과태료, 연령제한 등을 포함하지 않음)
-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4]
- 5)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5]
- 6) 학생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6],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대한 부서의견서[별첨 7]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을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학생,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으로 한다.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p> <p>② 위원회는 <u>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u></p>	<p>제9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p> <p>② 위원회는 <u>교원, 학부모, 학생,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을 -----</u> ----- ----- ----- -----.</p>
<p>제15조(학생의 안전보장)</p> <p>①~② (생략)</p> <p>&lt;신설&gt;</p>	<p>제15조(학생의 안전보장)</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u></p>
<p>&lt;신설&gt;</p>	<p>④ <u>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lt;신설&gt;</p>	<p>⑤ <u>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학생의 안전보장)에 따른 필요 경비 발생  
(현장실습생의 보고에 따른 안전과 보전에 필요한 조치 이행)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학생의 안전보장) 제3~5항 적용에 따른 현장실습생  
안전과 보전에 필요한 조치의 예는 학교전담노무사 산업체 지도·코칭, 교원의  
순회지도 등을 통해 이루어 지며 소요 비용은 기편성된 산업체 직무교육 지원  
예산(2022년 기준 324,000천원)\*에서 운용할 수 있음

####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사 이지연(02-3999-564)

【별첨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예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의견 없음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김재열
입안주관부서	진로직업교육과	통보일	2022. 2. 1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학생-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 간 의견수렴과 이해·협력이 중요한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li> <li>- 또한,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받는 경우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게 하여 실제 사업장에서 보다 폭넓은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 하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li> </ul>		“원안동의”
안 제15조			

【별첨 5】

<b>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2022A서울교육003			
정책명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진로직업교육과		
	담당자명	이지연	전화번호	02-399-956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2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진로직업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관련 조항 없음</li> <li>-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통계 관련 해당사항 없음</li> </ul>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02월 03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김소영/02-399-9675)</p> <p>진로직업교육과장 귀하</p>				



【별첨 6】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진로직업교육과	담당자	직급	장학사	성명	이지연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고태훈, 곽민재, 권정우, 김희진, 노희창, 송지은, 정진권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15조 3항	<p>-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개정 조항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만큼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드립니다.</p> <p>1. 산업재해,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 -&gt;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주관적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한 문장에 '위험'이라는 동일 자구가 반복되어 수정이 필요함. 당해 문구를 '위험'에서 '우려'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p> <p>2. 작업거부권 및 학생위원 참석, 학교장의 작업 현장에 대한 심의의무 등의 실효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칙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p> <p>(1) 산업재해,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나 예시 등을 통한 실효성 확보</p> <p>(2) 거부, 중지, 대피 등의 과정을 현장에서 바로 도울 수 있는 조력자를 필수로 배치하여 실효성 확보</p> <p>(3) 거부 또는 중지시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 실효성 확보</p>					수정의견 있음

【별첨 7】

**자치법규(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부서 의견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진로직업교육과	담당자	소속	취업지원팀	직급	장학사
			성명	이지연	전화번호	399-9564
소위원회 검토의견		수용여부	부서의견			비고
<p>1. 산업재해,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 -&gt;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주관적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한 문장에 '위험'이라는 동일 자구가 반복되어 수정이 필요함. 당해 문구를 '위험'에서 '우려'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p>-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위험'은 <i>산업재해 신체적 정신적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i> '우려'의 상태를 포괄함 - 문구 사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관리담당관과 협의함</p>			
<p>2. 작업거부권 및 학생위원 참석, 학교장의 작업 현장에 대한 심의의무 등의 실효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칙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산업재해,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나 예시 등을 통한 실효성 확보 (2) 거부, 중지, 대피 등의 과정을 현장에서 바로 도울 수 있는 조력자를 필수로 배치하여 실효성 확보 (3) 거부 또는 중지시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 실효성 확보</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p>- 현장실습생 사전교육은 본 조례 제12조1항을 통해 필수로 실시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현장실습 운영 지침 및 매뉴얼(매학년도 수립)로 실효성 확보함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현장실습계약 등)에 의하여 현장실습시 조력자(기업현장교사) 필수 배치 운영됨(우반시 과태료부과) -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학생(현장실습생)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을 보장함</p>			【붙임】 참조

## 【붙임】 부서의견 관련 법규 및 지침

###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30호, 2020. 1. 9., 제정]

**제12조(사전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산업안전·직업윤리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현장실습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21. 7. 22.] [서울특별시조례 제8119호, 2021. 7. 22., 일부개정]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2.>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7. 7. 26., 2018. 3. 27.>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7.]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

업체의 장

가. 현장실습 기간

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보건상의 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2. 3.]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 ■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

[시행 2021. 5. 13.]

### IV. 현장실습 학생 지도 및 감독

①(사전교육) 학교는 학생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노동관계법(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업윤리교육, 실습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별첨 8】

# 관련법규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21. 6. 24.] [법률 제17957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7조(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8. 3. 27., 2018. 12.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6. 7.]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